

농림축산식품부 시 정 요 구

제 목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진주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내 용

경상남도에서는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조건불리직불제 지급 대상농지, 지급대상자, 신청자격, 지급요건 등을 확인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직불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2조의5(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시행규정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000㎡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농업인 등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에서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직불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토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자인 농업인이 각 직불제 신청 당시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

으나, 이후 직불제 등록(신청)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단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지 이용여부 등이 충족되지 못하여 실제 재배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으로 현장점검 결과가 전산시스템으로 자치단체에 전송되었으며,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서는 지급요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직불업무 담당자는 지급대상자 선정단계와 지급요건 확정단계, 자금 배정 및 집행단계 시 직접직불금 수령 필지의 직불제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따라 직불금 중복지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상남도 거창군, 남해군, 함양군 등 11개 시·군에서는 전송된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행 및 불일치로 판정된 해당 농지에 대해서 직불제 사업대상자 지급 제외 요건중 농지면적(밭농업)의 합이 1,000㎡ 미만인 대상자와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조건불리보조금의 중복 지급, 밭농업직접직불보조금과 조건불리보조금의 중복지급된 해당농지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표] “조건불리직불금 부당지급 현황”과 같이 해당 필지의 직불금 신청자에게 2013~2015년까지 총 138호 농가, 10,550,820원의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조건불리직불금 부당지급 현황(1,000㎡ 미만 및 직불금 중복지급)

시군명	직불금지급내역(㎡, 원)			직불금회수대상내역(㎡, 원)	
	수령자	지급면적	지급금액	회수대상면적	회수금액
합계	138	240,658	10,550,820	240,658	10,550,820
진주시	8	5,830	254,360	5,830	254,360
밀양시	3	13,982	410,310	13,982	410,310
의령군	10	12,197	487,880	12,197	487,880
함안군	1	159	6,360	159	6,360
창녕군	2	2,072	103,600	2,072	103,600
남해군	20	25,294	1,011,760	25,294	1,011,760
하동군	16	22,805	992,420	22,805	992,420
산청군	2	3,901	156,040	3,901	156,040
함양군	39	104,587	5,066,660	104,587	5,066,660
거창군	19	36,525	1,529,190	36,525	1,529,190
합천군	18	13,306	532,240	13,306	532,240

조치할 사항 진주시장, 밀양시장, 의령군수, 함안군수, 창녕군수, 남해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거창군수, 합천군수는

조건불리지역 토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 쌀 및 밭농업직불금 중복수령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지급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10,550,820원을 회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